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 안 번 호	140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2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 정류소명을 광고 수단으로 전환하여 주된 명칭과 병기 명칭의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에 유상 판매를 통해 세수 증대
- 창출된 수익은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나. 주요골자

-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6. 9. ~ 2022. 6. 29.
- 제출의견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선안내도 등에 정류소 명칭을 광고 수단으로 유상판매하고,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목적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의 정의,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의 용어 정의 관련(안 제2조제5호)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소 명칭광고를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2호1)에서는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을 “승강장”과 “승차대”를 구분하고 있고, “버스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에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서 “승강장”²⁾을 버스승객의 승하차 및 대기를 위한 보도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실적으로도 서울시는 승강장 위에 승차대를 설치³⁾하고 있고, 시내버스정류소 명칭을 정류소별 편의시설 설치 여건에 따라 “표지판”과 “승차대”에 표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승차대”가 아닌 “승강장”에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정류소 명칭 표기 실정이 조례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관련(안 제8조의2)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서울시의 시내버스 정류소는 크게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정류소(이하 중앙 정류소)와 도로의 보도에 설치된 정류소(이하 가로변 정류소)로 구분할 수 있고, 시내버스 정류소 전체 6,584개

2) 버스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서울시, ’17.10. 1p)

- ‘버스승강장(Waiting area)’이란 버스승객의 승하차 및 대기를 위한 보도공간을 의미한다.

3) 버스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서울시, ’17.10. 10p)

- 승차대 설치기준 : 이용승객의 버스도착 확인 및 승하차가 용이하며, 기후에 의한 이용불편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도폭 3.6m 이상인 구간에 ‘-’형 또는 ‘ㄱ’형 승차대를 설치한다.

소 중 5,737개소는 민간사업자가 정류소 광고판과 표지판 및 승차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사업기간 종료후 서울시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시설물임

※ 시내버스 정류소 현황

구 분	계	승차대설치정류소		가로변 정류소 (표지판)	비 고
		중앙 정류소	가로변 정류소		
합 계	6,584	390	3,283	2,911	-
서울시 관리	847	146	7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류소 편의시설 기부 채납, 가로변 정류소는 '15년부터 시비로 설치 - 정류소 관리는 민간사업자 를 선정 별도 협약체결
민간사 업자 관리	소 계	5,737	244	2,582	2,911
	KT 컨소시엄	5,493	-	2,582	2,911
	JC데코	244	2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0월 운영 기간 종료후 기부채납 - 230개소 사업연장 등 소송 중(14개소 '31년 6월 기부채납)

주) 중앙정류소에 환승센터 포함(서울시 내부자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⁵⁾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4)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공공시설”⁶⁾을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시설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⁷⁾에서도 “공공시설”을 서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⁸⁾에서도 “재산”을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 공공시설 관련 서울시 조례현황

조례명	관련조항	공공시설 정의 및 범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적용의 범위 등)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 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은 상당수의 정류소 승차대를 “공공시설” 또는 “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동 개정조례안 시행시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에 한정하여 명칭 유상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에 대해 울산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⁹⁾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울산시의 경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지방차지법」 시행령 별표1 4.거¹⁰⁾에 따라 관내 군 자체 예산을 통해 설치·관리하고 있어 서울시와 시내버스 설치관리 여건이 상이한 상황임

■ 조례 시행 시의 고려사항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동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에서 세부적인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 사용계약, 사용기간, 사용료 수준 등

9)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2365호, '21.3.18. 제정 및 시행) ※ '21년 9개 정류소 명칭(3년 사용) 변경으로 3억 8,700만원 확보

10) 「지방차지법」 시행령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구 분	시 · 도 사무	시 · 군 · 자치구 사무
4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 · 관리 4) 가로등의 유지 · 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 · 관리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 자칫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임

- 또한 서울교통사가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역명병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따릉이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명칭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운영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은 정류소가 입지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갖고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최고가 방식의 입찰을 통해 명칭을 부여할 경우 지역주민간 분쟁발생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정류소 명칭을 사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함께 서울시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교통시설에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한 상황임
- 한편 1개 정류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이 경유하는 다른 정류소의 노선도 수정 및 교체, 차량 내부안내방송, 노선도, LED행선안내기 수정 등을 위한 행정비용이 필요함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개재된 비용은 12만원에 불과하는 등 비용추계 내역이 개괄적인 바, 소요비용 산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정류소 명칭을 승강장이 아닌 승차대에 표기하는 현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용어의 뜻을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서
-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용어의 뜻을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조 제5호)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40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19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정류소 명칭을 승강장이 아닌 승차대에 표기하는 현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용어의 뜻을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서
-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용어의 뜻을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5호)

-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
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서울시장 제출안	수정안(위원회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u>관리</u>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 <u><신설></u></p>	<p>제1조(목적) ----- ----- ----- ----- ----- ----- 관리, 시 <u>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u> ----- ----- -----. -----.</p> <p>제2조(정의) ----- ----- -----.</p>	<p>제1조(목적)<시장 제출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 5. “<u>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u>”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p>

현 행	서울시장 제출안	수정안(위원회안)
<u><신 설></u>	<p><u>하는 것을 말한다.</u></p> <p><u>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u></p> <p><u>①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u></p> <p><u>③ 시내버스정류소의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하는 것을 말한다.</u></p> <p><u>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u></p> <p><u>①<시장 제출안과 같음></u></p> <p><u>②<시장 제출안과 같음></u></p> <p><u>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 “관리.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p> <p>-----</p> <p>----- 관리, 시내버스정류소</p> <p><u>명칭 사용</u>-----</p> <p>-----</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u>”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u><신 설></u></p>	<p>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p>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